

|  |   |
|--|---|
| <p><b>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<br/>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</b></p> <p><b>□검토의견</b></p> <p><b>가. 개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정된 전염병예방법(2000. 8. 1)에서 나병이 한센병으로 병명이 바뀜에 따라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로·변경 및 병명관련 조문을 정비하고.</li> <li>- 부랑한센병환자의 관리에 위하여 위탁근거를 신설(제2조제8호, 제9호)하여 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과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 참여 유도 및 관리도록 협행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임.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나. 검토사항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른 병명변경 관련조문 정비와 조례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 정비 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.</li> <li>○ 안 제2조제8호, 제9호 - 위탁사업추가 위탁사업에 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과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 참여 유도 및 관리사업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재 수탁자와의 협약서에 의거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, 조례에 명문화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음.</li> </ul> </li> <li>○ 안 제3조제2항 - 위탁사업 경비지급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조례안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요 경비를 전액 지급 가능토록 하였음.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병의 특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수탁단체에 대한 과다지원의 오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기 위탁사업 경비지원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.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<br/>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</b></p> | <p><b>□검토의견</b></p> <p><b>가. 개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(2000.10.1)에 따라 시·도 단위로 구성·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「생활보장위원회」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</li> <li>- 당연직위원에 여성정책관을 추가하며</li> <li>- 민간인도 행정1부시장과 함께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</li> <li>- 또한, 여성정책관도 보건복지국장과 함께 부위원장직을 맡도록 규정하였으며</li> <li>- 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수 3분의 1 이상 요구로 회의개최 소집요구 가능토록 변경하려는 것임.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나. 검토사항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사회복지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토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되,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,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토록 한 것은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방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됨.</li> </ul> </li> <li>○ 이외에 공동위원장제 도입, 위원수 3분의 1 이상 회의개최 소집 요구권의 추가 등은 조례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됨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<br/>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</b></p> <p><b>□검토의견</b></p> <p><b>가. 개요</b></p> |
|--|---|

|   | 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 관련조례를 단일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여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합사회복지관, 장애인복지관, 노인복지관, 부랑인보호관련시설, 아동·부녀복지관련시설 등 총 39개 적용대상 시설을 규정하고,</li> <li>- 부랑인 보호시설과 부랑인 보호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이용자 자격을 정하며,</li> <li>-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임.</li> </ul> </li> <li>○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과 시설관리운영위탁 사항은 '98.4.30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되었으나, 통합조례로서는 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어 시설 유형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이며, 우리 위원회 소관 중 여성발전센터는 2000. 7. 25 제정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.</li> <li>○ 그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단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위탁 등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.</li> </ul> <p>나. 안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한 것은 이미 수탁자가 확정되었기에 또한 예산상의 이유로 서울특별시보에만 게재하더라도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, 가급적 이면 행정의 투명성 확립 차원에서 서울특별시보 뿐만 아니라 이외의 홍보매체를 반드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함이 좋겠다고 생각됨.</li> </ul> <p>다. 안 제7조(수탁자 선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 및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의 규정 이외에 수탁자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,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행정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제반 수탁자 선정 기준을 조례에 명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</li> </ul> </li> </ul> | <p>라. 기 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외에 서울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지역 주민에 대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부 혐오시설로 비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으며, 시설의 위탁기간 종료 또는 취소 시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안 제8조(시설관리 등) 등에 대하여도 별도 의견이 없음.</li> </ul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 관한 조례<br/>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 관한 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단체 등에 위탁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탁사업)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(이동진료사업 포함)</li> <li>2.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</li> <li>3. 한센병의 조사·연구사업</li> <li>4.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</li> <li>5. 한센병 환자의 입원치료사업</li> <li>6.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·운영</li> <li>7.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</li> <li>8. 부랑한센병 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</li> <li>9. 한센병 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</li> </ol> |
|---|--|